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추경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2636

발의연월일: 2021. 9. 23.

발 의 자 : 추경호 · 이종배 · 엄태영

김예지 · 이주환 · 성일종

조명희 · 김상훈 · 백종헌

김선교 · 김용판 · 윤창현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·어업 및 임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, 영농조합법인·영어조합법인·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, 농어업 경영·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, 농·어업 및 임업 관련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 및 농·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등 관련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, 동 제도들은 각각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장기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입국 차질로 인한 인력난 및 내수 위축으로 인한 판매 부진 등 농·어업 및 임업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을통하여 농·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·어업 및 임업 관련 조세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 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4조, 제66조, 제67조, 제68조, 제106조제1항제3호, 제106조의2제1항제1호, 제116조제2항제3호).

### 법률 제 호

#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각각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6조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7조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

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제2호, 제3호"를 "제2호"로, "적용하며"를 "적용하며, 제3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"로 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 4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16조제2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"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1호 및 제19호"를 "제19호"로 한다.

2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 및 제1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만 적용

## 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4조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	제64조(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
대한 세액감면) ① 다음 각 호	대한 세액감면) ①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	
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	
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(이	
하 이 조에서 "감면대상사업"	
이라 한다)에서 발생한 소득에	
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	
면한다.	
1.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「산	1. <u>2024년 12월 31일</u>
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	
률」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공단지	
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	
발사업을 하는 내국인	
2. 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「중	2. <u>2024년 12월 31일</u>
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	
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	
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	
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	
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	
② ~ ⑧ (생 략)	② ~ ⑧ (현행과 같음)
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	제66조(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

법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(이하 "영농조합법인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(이하 "식량작물재배업소득"이라 한 다)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.

②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. 이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

법인세의	면제	등) ①	
		- <u>2024년</u>	12월 3
1일			
		,	
②			
12월 31일	<u>]</u>		
		·	
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③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 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, 그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「초지법」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 지(이하 "초지"라 한다)를 영농 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(현물출자와 관 련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「국토의 계획 및

③
<u>202</u>
<u>4년 12월 31일</u>
4
<u>2024년 12월 31일</u>

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 거지역 ·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(이하 이 조부터 제69조까지,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"주거지역등"이 라 한다)에 편입되거나 「도시 개발법 |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(換地處分)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 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(5) • (6) (생략)

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영농조합법인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·축 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(제4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)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2024년 12월 21회
<u>2024년 12월 31일</u>

용받을 수 있다.

### ⑧ ~ ⑩ (생 략)

- 제67조(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[이하 "영어조합법인"(營漁組合 法人)이라 한다]에 대해서는 20 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를 면제한다.
  -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<u>2021년</u>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.
  -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 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 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 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 율은 「소득세법」 제129조에

,
⑧ ∼ ⑩ (현행과 같음)
제67조(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
법인세의 면제 등) ①
<u>20</u>
24년 12월 31일
 -
②
<u>2024년</u>
<u>12월 31일</u>
 ②
3
202
<u>202</u> 4년 12월 31일
<u>11: 12 01 E</u>

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, 그 배당소득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(이하 이 조 및 제71조 에서 "어업용 토지등"이라 한 다)을 영어조합법인과 「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(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 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 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 외한다)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 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 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

4
<u>2024년 12월 31일</u>

입되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#### ⑤ • ⑥ (생략)

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 인세의 면제 등) ① 「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(이하 "농업회사법인"이라 한 다)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 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 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 하고,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 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(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 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제68조(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
인세의 면제 등) ①
2024년 12월 3
<u> </u>
<u></u>

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)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.

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 인(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법 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 한다)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 생하는 소득(현물출자와 관련 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) 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농지 또 는 초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 되거나 「도시개발법」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또는 초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

,
②
<u>2024년 12월 31일</u>

거나,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 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다.

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인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·축 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(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)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 용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66 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.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 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 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 제하고.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2항

③
<u>2024년 12월 31일</u>
4
<u>2024년 12월 31일</u>

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 식 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 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 ⑤・⑥ (생략)
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, 제4 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 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 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만 적용하고, 제2호, 제3호, 제4 호의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 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, 제8호 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 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①
·
<u>제2호</u>
<u>적용</u>
<u>하며, 제3호는 2024년 12월 31</u>
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

- 1. ~ 12. (생 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저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, 교통・에너지・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 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,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.
  - 1. 2. (생 략)
  - ② ~ ② (생 략)

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생 제116조(인지세의 면제) ① (현행

- 1. ~ 1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세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
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
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
등) ①
<u>2024년 12월 31일</u>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② ~ ② (현행과 같음)

략)					
2	제1항	각	호에	따른	서류의

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1. (생 략)

<u><신 설></u>

3. 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제11호 및 제19호는 2021년 1 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

4. • 5. (생략)

과 같음)
②
1. (현행과 같음)
<ol> <li>제5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</li> </ol>
및 제11호는 2024년 12월 31
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
<u>만 적용</u>
3. <u>제19호</u>

4. • 5. (현행과 같음)